

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[별표 1]

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1.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·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

가. 인식의 용이성

- 1)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
- 2)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대본 또는 수어(手語)를 제공해야 한다.
- 3) 콘텐츠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4) 지시 사항은 모양, 크기 위치, 방향, 색, 소리 등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5)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.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.
- 6)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7)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.

나. 운용의 용이성

- 1)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2)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,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
- 3)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.
- 4)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- 5) 초당 3~5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- 6)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뛴 수 있어야 한다.
- 7) 페이지, 프레임 및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.

다. 이해의 용이성

- 1)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2)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(새 창, 초점변화 등)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.
- 3)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.
- 4)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.
- 5)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(label)을 제공해야 한다.
- 6)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
라. 견고성

- 1) 마크업(markup)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,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.
- 2)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.

2.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·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

가. 인식의 용이성

- 1)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.
- 2)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같은 내용의 자막, 원고 또는 수어가 제공되어야 한다.
- 3)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4)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(前景色)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- 5) 지시 사항은 모양, 크기, 위치, 방향, 색, 소리 등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6)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, 소리,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
나. 운용의 용이성

- 1)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이 적용되고,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.
- 2)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- 3)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.
- 4)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- 5)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
다. 이해의 용이성

- 1) 입력서식 이용 시,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- 2)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.
- 3)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- 4)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5)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
라. 견고성

- 1)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- 2)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